

# 예 산 총 칙

202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967,887,739	59,036,632
일반회계	1,638,467,346	49,154,020
특별회계	329,420,393	9,882,612
공기업특별회계	248,769,126	7,463,07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2,624,225	3,078,72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6,144,901	4,384,347
기타특별회계	80,651,267	2,419,538
주택사업특별회계	239	7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7,402,649	522,079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52,694	1,581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7,019,105	210,573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43,138,281	1,294,148
지하수특별회계	1,443,546	43,306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453,252	13,598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9,864	1,196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82,707	8,481
수질개선특별회계	10,746,681	322,400
기반시설특별회계	72,249	2,16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4,000,000천원으로 한다.